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 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규정 적용기준 시달

농림수산부는 지난 2일부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규정 적용기준(농지 51307-741)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달 하였다.

- 다 음 -

1. 농지 27210-996('92.12.15),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중 개정령(농림수산부 훈령 제772호 '93. 8.18)과 관련입니다.
2. '92.12.24부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별표2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서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이 보조되는 사업”은 농지조성비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5천㎡이하까지 전액면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93.12.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469호)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이 폐지되어 동 기금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 통

합됨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비보조(융자는 제외)를 받고 있는 일부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이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어 상기 규정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동규정 적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별표2제10호중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이 보조되는 사업”의 범위에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융자는 제외)받는 사업은 모두 포함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도 동 적용기준에 적합여부를 재점검하여 착오가 있는 부분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환급 등 정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티푸스 전국에 발생주의보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부로 가금티푸스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다 음 -

닭에 발생하는 가금티푸스는 원인균이 세균이며, 법정전염병인 추백리와 그 특성이 유사하나 발병시 성계에서도 높은 폐사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으로 1992년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국내 발생을 처음 확인한 이래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발생한 예로는 1992년 경기 김포에서 최초로 발병한 이후 1993년 전북 고창의 일부 양계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 양주·포천, 충남 홍성, 경북 김천 등의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여 산란저하는 물론 폐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금티푸스균이 양계장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양계농가에서는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진단과 진단

○벼슬이 창백하고 옹크리고 있으며 황색 또는 푸른색의 설사를 한다.

◦ 사료섭취량이 줄고 산란율이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폐사한다.

◦ 부검했을 때 간 및 비장이 부어 있으며 때로는 간이 녹갈색 또는 청록색을 띄기도 한다.

◦ 주요증상 및 부검소견이 추백리와 유사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각도 가축위생시험소나 가축위생연구소에 가검물을 의뢰하여 실험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예방

◦ 양계장내 외부인이나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특히 개, 고양이, 야생조류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고 쥐나 곤충 등을 구제한다.

◦ 양계장내외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한다.

◦ 가금티푸스는 알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병아리 구입시 가금티푸스가 발생하지 않은 종계장에서 구입한다.

◦ 가금적 성계와 병아리는 따로 사육한다.

◦ 종계장에서는 추백리 진단액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검색을 하고, 양성계는 즉시 도태한다.

◦ 사료통과 물통에 닭똥이 묻지 않도록 하고 병든닭을 관리하던 사람은 건강한 닭을 관리하지 말아야 하며 가금티푸스에 감염되어 죽은닭은 땅속 깊이 묻는다.

□ 치료

◦ 가금티푸스로 의심되면 각도 가축위생시험소나 가축위생연구소에 의뢰하여 원인균에 대한 약제감수성 시험결과에 따라 유효한 약제를 선별한 후 치료한다.

◦ 치료약제로는 엠포실린, 세파로틴, 가나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겐타마이신, 바이트릴 등이 있다.

◦ 투약방법은 음수 또는 사료에 첨가 급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2가지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투약기간은 7일이상 하여야 하며 투약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속 주의깊게 관찰한다.

'95년 농림수산업예산 8조123억원으로 책정

정부는 '95년 농수산부예산안을 올해보다 39.4% 늘어난 8조123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총 50조1천4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수산부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부예산(안)

◇ 총괄 (단위: 억원)

구분	'94예산 (A)	'95예산 (안)(B)	증△감		
			(B-A)	%	
기	57,496	80,125	22,629	39.4	
능	1. 사업비				
	◦ 순사업비	34,127	47,441	13,314	39.0
	◦ 양곡지원	13,886	18,597	4,711	33.9
	- 수매지원	8,299	6,450	△1,849	△22.3
	-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5,587	12,147	6,540	117.1
	◦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5,907	6,125	218	3.7
별	◦ 차관원리금 등	3,576	7,962	4,386	122.7
2. 기본적경비	2,204	2,313	109	4.9	
계	59,700	82,428	22,738	38.1	
	(농림수산부소관)	(53,244)	(71,044)	(17,800)	(33.4)
제	◦ 일반회계	19,982	25,714	5,732	28.7
원	(농림수산부)	(14,980)	(20,504)	(5,524)	(36.7)
	◦ 농특회계	28,417	45,556	17,139	60.3
별	(농림수산부)	(28,155)	(40,814)	(12,659)	(45.0)
	◦ 재특회계	11,301	11,168	△133	△1.2
	(농림수산부)	(10,109)	(9,726)	(△383)	(△3.8)
	양곡관리특별회계	19,024	17,274	△1,750	△9.2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138	1,187	49	4.3

※ 회계간 전출규모를 제외한 순계규모임.

◇ 부문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94예산	95예산 (안)	증△감	주요내용
◦ 농림수산업	34,339	47,491	13,152	
구조개선				• 후계자 지원: 15→20백만원/1인
- 정예인력	2,991	4,318	1,327	• 전업농육성 11,200→12,000명
육성				• 경지정리, 용수개발, 수리시설
- 생산기반	9,676	13,807	4,131	개보수, 대단위농업개발 등
정비				

-영농규모화	1,349	1,635	286	•실사업비 2,300→2,809
-농업기계화	3,384	4,054	670	•공동이용조직 326, 반값공급 및 일반용자 2,926, 농기계 사후관리 등 802
-시설현대화	3,359	4,879	1,520	•과수·화훼·채소 1,445→2,260 •축산사업 1,703→2,260
-기술개발	1,595	2,277	682	•일반연구 및 지도 1,614, 첨단 및 환경애로 기술개발 663
-유통·가공·저장	2,683	4,617	1,934	•도매시장, 물류센터, 공관장 등 유통시설확충 970→1,921 •산지저장가공 등 1,532→2,015 •유통조성·수출지원 143 •채소유통활성화 500
-수산업구조개선	3,025	4,546	1,521	•항만건설 1,318, 수산자원조성 512, 양어자금 1,332, 어업구조개선 등 1,384
-임업구조개선	1,468	1,979	511	•조림 및 육림 464, 임도시설 및 사방 511, 산림보호 등 1,004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4,809	5,379	570	•영농·양축자금지원 2,788, 농공·특산단지 등 707, 정주권개발·주거환경개선 등 1,484, 생활용수개발 400
◦소득보상지출, 기타	23,063	32,315	9,252	
-양곡지원	13,886	11,597	△2,289	•정부수매550만석(95년산)
-이차보전 등	5,683	5,980	297	•부담경감, 비료가격보전 등
-차액보상	224	145	△79	•옥수수, 유채, 호프 차액보상
-채무상환	3,270	14,593	11,323	•양곡증권부채상환 7,000, 채권 및 차입원리금상환 3,270→7,593
◦기타농수산사업	94	317	223	
계	57,496	80,123	22,627	39.4%증
42조원 투자계획사업	35,912	42,862	6,950	19.4%증

국립동물검역소 수입종란 검역실시

국립동물검역소는 지난 15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종란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였다.

종란의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매추리 및 꿩 등의 종란(이하 "수출종란"이라 한다)은 "한국으로 종란을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종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종란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que)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단, 한국 농림수산부장관이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2.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 종란의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뉴캐슬병(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및 새롭게 확인된 중요 가금질병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에는 종란의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가금티프스, 마렉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 빈혈(CAA), 전염성 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수출종란을 생산하는 종계군은(암·수 모두) 초생후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이상 이어야 하며, 대상종계

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또는 한국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국 정부의 종계장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서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7. 수출종란은 포장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독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출종란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서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수출종란은 수출국 국내 및 한국으로의 수송 중에 수출종란 이외의 난, 조류 및 가금생산물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10.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 1) 상기 1, 2, 4 및 6~8항에 명시된 사항
- 2) 별표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 사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미실시 사유
- 3)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 접종 년월일 및 백신의 유효기간
- 4)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 5) 종란의 경우(육용·산란용), 품종 및 조량
- 6) 수출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과 소독장소와 일시
- 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 9)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11.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감염이 확인된 경우 당해 종란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발족



정부의 각종농정개혁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가 12일 발족했다.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13개 농민단체대표들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농업기술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상임대표에 박덕영 농어민후계자연합 회장을 선출했다.

농정감시회는 대통령선거공약 및 정부의 각종 농어촌발전대책과 현재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중인 농지법, 농안법, 협동조합 등 각종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본회 이규성 전무는 “양계산업 육성 정책”이란 주제로 양계산업의 현황, 문제점, 향후 양계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다.

WTO가입 동의안처리와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평가대회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WTO가입 동의안처리와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평가대회가 지난 8일 농민단체장을 비롯한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5가 소재 기독교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장원석교수의 “사전적 대응조치 완비후 비준동의의 당위성” 권영근 부소장의 “’94농어촌발전대책의 평가와 본질” 그리고 ’94 농발대의 활동 등 UR, WTO라는 민감한 국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와함께 각계인사들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제 3 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

대산농촌문화재단(이사장 유태영)은 지난

1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제 3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을 갖고 본상에 박중춘 경상대 교수와 도드람유통 진길부 대표이사를 각각 첨단농업기술진흥부문과 농업구조개선부문의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TMR배합소협의회 출범, 초대회장에 최장환 서해낙협장 선출

전국 규모의 TMR운영 배합소협의회가 지난 13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에 TMR사료를 공동이용중인 낙농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TMR배합소 운영협의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에 최장환 서해낙협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경력사원 및 신입사원 모집!

쌀텍 직립식 케이지 시스템을
설치·감독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및 자격 «

분	야	인원	자 격
케이지 및 기계관련설비	부문	○名	28~40세
계 사 자 동 화	부 문	○名	28~35세
각 부문 해외여행 경력사유가 없는 자			
기계 및 자동화 콘트롤 부문 유경험자 우대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2. 자기소개서(상세히 작성 요망)
3. 제출기한: 1994년 8월 13일
4. 제출처: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47-8(리젠트오피스텔 515호)
TEL:(02)458-0752~4 / FAX:(02)458-0755
한 국 양 계 시 스템



독일직립식 케이지

20년의 제작노하우+ 구동독의 낮은임금



쌀텍 케이지 한국상륙

- * 자급에서 건축, 수입, 설치까지 책임집니다.
- * 저가경 실현, 20년의 설계 노하우
+ 구동독의 낮은임금.

한국양계시스템

쌀텍사업부

전화 (02) 452-8055
팩스 (02) 452-2921